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63
----------	-----

2019년 6월 28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29일 이영실 의원의 10명
2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3. 상정일자 :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6월 1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영실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‘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’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옮기고, 「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함(제10조~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·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이관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삭제하려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조항 삭제




-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담당관 소관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이관하여 직장맘지원센터와 담당부서와의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.
- 가족담당관 소관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최초부터 해당 업무를 여성가족담당관에서 담당해 온 바,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정책 실 업무 담당부서와 조례 소관부서가 일치하게 되어 보다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집행부의 직장맘지원센터 관리·지원 부서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위해 센터 근거 조항을 이관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.

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현황

(2019.5월말 현재)

구 분	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	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	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
위 치	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,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	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호	 은평구 통일로 684,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
규 모	122㎡(약37평)	61㎡(약18.4평)	57㎡(약17.3평)
개 소 일	2012. 4. 1.	2016. 7.20.	2017. 11. 24
인 원	9명 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6)	6명 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3)	6명 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3)
위탁기간	2019. 1. 1. ~2020.12.31.(2년)	2018. 5. 1. ~2021. 4.30.(3년)	2017. 9.15. ~2019. 9.14.(2년)
위탁법인	(사)노동희망 ※1회차	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※2회차	(사)노동희망 ※1회차
사업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- 노동권, 모성보호, 보육, 심리상담 등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직장맘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·제공 일·가정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홈페이지 운영 및 사례집 등 책자 발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- 노동권, 모성보호, 보육, 심리상담 등 직장맘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·제공 직장문화 개선 등 컨설팅 추진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모성보호 영상 콘텐츠 개발 직장맘 지원 네트워크 구축 홈페이지 운영 및 사례집 등 책자 발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노동권, 모성보호, 보육, 심리상담 등 직장맘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·제공 직장문화 개선 등 컨설팅 추진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직장맘 지원 네트워크 구축 SNS, 뉴스레터 등 홍보추진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 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6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발 의 자 : 이영실, 김혜련, 이병도,
오현정, 김동식, 김용연,
봉양순, 서윤기, 이정인,
김화숙, 김소양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‘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’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로 옮기고, 「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함(제10조~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하고, 제9조의2를 제10조로 한다.

제10조 앞에 “제3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”를 삭제한다.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)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제9조의2 (생략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서울특별시</u> <u>직장맘지원센터</u></p> <p>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<u>제9조제3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</u></p> <p>2. <u>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</u></p>	<p>제9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<u>제10조 (현행 제9조의2와 같음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원사업

3. 일·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

사회문화 조성사업
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

지원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

<삭 제>

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
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
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
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
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
있다.

제12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

<삭 제>

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
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
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
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
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
준용한다.

제13조(보고 및 조사) 시장은 센

<삭 제>

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
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

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
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
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·검사하
게 할 수 있다.

제14조 (생략)

제11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